

신용카드

임 춘 심/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교육부장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 받
는 현금 서비스와 물품 대금 지불에서부터
가계 대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으
로 현대인의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 와서 자리
잡고 있다. 현금 보다 간편하고 사용하기가 편리
하여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때
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
여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신용카드는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자필로 서
명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거
나 도난 당한 카드는 타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비밀번호는 남에게 노출하
지 않는 숫자로 정한다. 카드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자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
호와 자택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였
을 때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카드사나 거래 은행
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확실하나, 전화로 먼저 신고 할 때에

는 전화를 받고 접수한 사람의 이름과 접수시간,
접수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계산하는
곳에 가서 작성과정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매
출 전표 영수증은 대금 결제일까지는 보관해 두었
다가 청구금액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남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 보관과
이용을 위임했다가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에
는 보상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연체
하게 되면 연체료의 추가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는 집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거래하는 신용카드 회
사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자 자신의 사용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
는 즉각적인 정정절차를 밟도록 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
고 카드 가맹점에서 지불해야 할 부분이다. 소비
자는 할부 구입시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
료 외에는 어떤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및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신용카드는 현금 보다 간편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 어디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인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가맹점 수수료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사실을 알면 바로 카드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카드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적 피해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실, 도난 사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25일 전 이후에 제 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2. 발급카드 수령전 제 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 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한 제 3자의 부정 사용의 경우.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 된 경우.
5. 부당한 신용 불량자로 등재했을 때에는 사용 기록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2.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보관 이용위임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자료유통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3. 카드 회원의 가족,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
4.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내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질서 문란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6. 부정사용의 피해 조사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7. 카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분실이나 도난 사고 신고를 지연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 발행과 사후관리,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소비자의 마음가짐이다. 신용은 소비자 자신이 스스로 지켜서 신용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힘써시다. **PPPK**

상담전화 : 720-9898, 720-0328